긴급입찰 사유서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명 :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전시품 제작 및 설치 사업

나. 예산액 : 197,560,000원(부가세 포함)

다.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

2. 긴급입찰 사유

가. 근거 :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5조 제4항 4호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대한민국 선진 전자감독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다수의 해외 사법당국 고위 관계자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, 원활한 시설 운영 및 2026년 내 전시관 개관을 도모하고자 부득이하게 긴급공고로 진행하고자 함

>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
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6. 22., 2020. 5. 1.>
> 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>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>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>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>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2026. 7.

위 치 추 적 중 앙 관 제 센 터 장 (인)